#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9

발의연월일 : 2020. 10. 13.

발 의 자: 김성원·송언석·김정재

이종성 · 성일종 · 임이자

최승재 • 윤창현 • 엄태영

권명호 · 지성호 · 이명수

이종배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벌칙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5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 중 "500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의2(벌칙) ① (생 략)	제55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②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	
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	<u>1</u> 년 이하의
한다.	<u> 징역 또는 1천만원</u>